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소고

- 중국과 비교를 중심으로 -

신 찬 호*

<차례> _____

- | | |
|--------------------|----------------------|
| I. 서론 | IV.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유형 |
| II. 피보험이익의 개념 | V. 결론 |
| III.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 |
-

주제어 : 피보험이익, 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이익설, 관계설, 이익주의, 동의주의

<국문초록> 보험과 도박 모두 사행성 행위에 속하지만 양자는 확연히 다른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보험은 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와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보험을 도박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피보험이익의 효력이다.

피보험이익은 영국의 해상보험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보험업이 발전하면서 각국은 피보험이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피보험이익은 보험법에서의 핵심 개념이자 원칙으로서 도박을 방지하고 도덕적 위험 발생을 예방하며 손해보상금액의 정도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상의 피보험이익만을 인정하고 있고, 학계 다수의 견해도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점차 늘어가고 있는 도덕적 위험의 증가는 생명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9년 보험법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이익의 개념 및 피보험이익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생명보험까지 적용대상을 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개념과 주요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인정 및 그 인정범위에 관한 학설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9.10.09), 심사개시일(2019.10.10), 게재확정일(2019.10.29)

I. 서론

보험이란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의 사람들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경제적 수용에 대비하고자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와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미리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약정한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보험금)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¹⁾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는 말과 같이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을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하는데, 이러한 피보험이익이 없는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박계약이 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과 도박계약을 구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상의 피보험이익만을 인정하고 있고,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점차 늘어가고 있는 도덕적 위험의 증가는 생명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9년 보험법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이익의 개념 및 피보험이익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생명보험까지 적용대상을 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개념과 주요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인정 및 그 인정범위에 관한 학설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피보험이익의 개념

1. 피보험이익의 의의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1)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5, 22면;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1-2면.

2) 양승규, 전게서, 193면.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우리 상법 제668조에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668조, 제672조는 피보험이익이라는 용어 대신 ‘보험계약의 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사고의 객체인 보험목적과 다르다.³⁾ 판례와 통설은 보험계약의 목적이라는 용어보다 피보험이익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⁴⁾ 중국 보험법⁵⁾ 제12조 제6항은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⁶⁾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설명하는 견해는 이익설과 관계설로 대별 되고 있다. 이익설에 따르면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3)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의 목적’(상법 제666조 제1호, 제675조, 제678조, 제679조)과 구별하여야 한다.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할 객체가 되는 피보험자의 경제상의 재화를 말하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의미한다.

4)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8, 440면.

5)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中華人民共和國保險法 이하 ‘중국 보험법’이라 칭함)은 1995년 6월 30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었다. 총 8장 152조로 구성되었으며(총칙, 보험계약, 보험회사, 보험경영규칙, 보험업의 감독관리, 보험대리인과 보험중재인, 법률책임, 부칙 등) 1995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이후 WTO가입 시의 약속이행을 위한 조치와 제정된 보험법의 문제점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기구 등에 대한 감독관리 법규 등에 대하여 1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보험시장의 과도기적 성장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후 2014년 8월 3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5개 법률 개정의 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保險法〉等五部法律的決定)> 회의에서 3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보험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내·외부 환경에 모두 커다란 변화로 인하여 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등 5개 법률 개정의 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計量法〉等五部法律的決定)> 회의에서 4차 개정이 이루어져 중화인민공화국 주식령 제26호로 공포되었다.

6) 第十二條 人身保險的投保人在保險合同訂立時，對被保險人應當具有保險利益。
 財產保險的被保險人在保險事故發生時，對保險標的應當具有保險利益。
 人身保險是以人的壽命和身體為保險標的的保險。
 財產保險是以財產及其有關利益為保險標的的保險。
 被保險人是指其財產或者人身受保險合同保障 享有保險金請求權的人。投保人可以被保險人。
 保險利益是指投保人或者被保險人對保險標的具有的法律上承認的利益。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경제상의 이익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며,⁷⁾ 관계설은 피보험이익이란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목적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리킨다.⁸⁾ 독일 및 영미에서 다수설로서 영국의 Marine Insurance Act(1906)는 이 설을 취하여 제5조 제1항에서 “본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상보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모두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한다.⁹⁾

이익설은 관계설이 피보험이익을 설명하는데 있어 손해의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순환논법적 설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익설 역시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 순환논법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비판이 있다.¹⁰⁾ 실무적으로는 이익설이든 관계설이든 표현방법이 다를 뿐이지 구별의 실익은 크지 않으며, 어느 학설을 취하든 피보험이익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¹¹⁾

중국의 경우 피보험이익에 관한 학설은 경제이익설, 이해관계설, 법률상 이익설로 대별되고 있다. 첫째, 경제이익설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목적 또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둘째, 이해관계설에 따르면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물적 대상 또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셋째, 법률상 이익설에 따르면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물적 또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대한 합법적 이익을 가리킨다. 이러한 분류를 기초로 경제이익설과 이해관계설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법률상 이익설은 “피보험이익이 있어야만 하는 특성들을 구현하며 동시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 피보험이익이 보험법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되게 할 수 있으며 가장 적합하다고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¹²⁾ 이 주장은 경제이익설의 문제점이 주로 다음의 3가지에 있다고 한다. 첫째, 경제이익은 법률상의 권리 또는 합법적인 행위를 기초로 하여 얻는 이익과 일치될 수 없다. 둘째, 경제이익은 생명보험에 적용될 수 없다.

7) 박세민, 전게서, 399면.
8) 한기정, 전게서, 439면; 양승규, 전게서, 194면.
9)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8, 220면.
10) 양승규, 전게서, 194면; 장덕조, 전게서, 220면.
11) 박세민, 전게서, 399면; 한기정, 전게서, 439면; 양승규, 전게서, 195면.
12) 王萍, "保险利益研究", 中国政法大学 博士学位论文, 2002. 5頁.

셋째, 손해보험 중의 피보험자의 경제이익이 0일 때 법률상으로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이익을 결코 부정할 수 없으나, 피보험이익의 가치로 보상액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해관계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해와 손해가 상호 대응될 수 없다. 또한, 이해관계자는 이익을 얻는 것으로 제한 할 수 없으며 만약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성립될 수가 없다.¹³⁾

이러한 학설의 차이에 대하여 경제이익설은 금전으로 산정하여 나타난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하지만,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해관계설과 법률상 이익설은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설과 법률상 이익설은 차이가 없으며 단지 표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¹⁴⁾

2. 피보험이익의 기능

(1) 도박보험 방지

피보험이익은 도박보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도박과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나 도박꾼(bettor)은 선택의 결과에 금전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는 반면 피보험자는 재산상의 손실의 경우에 금전적인 이익을 가지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¹⁵⁾.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의해 보험은 도박과 구분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성립 내지 존속요건으로 피보험이익을 요구하게 되면 도박보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¹⁶⁾

(2) 도덕적 위험 방지

도박은 우연한 사항에 대하여 재물을 걸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금액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그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자신이 가지는 피보험이익을

13) 江朝國, “保險利益之研究”, 『保險法評論』 第1卷, 中國法制出版社, 2008, 5頁.

14) 鄭玉波, 『保險法論』, 三民書局, 2007, 47頁.

15) 양승규, 전거서, 199면.

16) 최준선, 『보험법·해상법』, 삼영사, 2010, 167-168면.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위적인 위험을 초래할 실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에 친족관계 등의 특별한 관계, 즉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할 경우 생명보험에서의 도덕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¹⁷⁾ 동일한 취지에서 우리 상법은 인위적인 보험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규정도 두고 있다. 다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보험자의 면책범위를 제한하고 있다(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따라서 이러한 피보험이익의 주요 기능을 활용하여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한다면 생명보험 계약에서도 적극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다.¹⁸⁾

(3) 보험자의 책임범위 결정

상법 제665조는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임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액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¹⁹⁾ 반면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손해보상의 기준 내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결정하는 역할로서의 기능보다는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이익을 가지는 자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²⁰⁾ 그러나 생명보험계약에서도 피보험이익이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손실보상의 성격이 있는 생명보험계약 즉, 채권채무 관계 등 거래관계에서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²¹⁾

보험자의 책임범위 결정에 대하여 중국 보험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은 “생명

17) 김철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17-18면.

18) 김대웅,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7, 148면.

19)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9, 667면.

20) 김대웅, 전제논문, 148면.

21) 김철호, 전제논문, 18-19면.

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하며,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또한, 중국 보험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보험가치를 약정하고 계약 중에 명기한 경우 보험목적에 손실이 발생한 때 약정한 보험가치를 배상 산정기준으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보험가치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목적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의 실제 가치를 배상 산정기준으로 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의 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된 부분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상응 하는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²³⁾고 규정하고 있다.

(4) 보험계약의 동일성 판단 기준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보험계약의 동일성은 보험에 붙인 재화가 아니고 피보험이익에 의해 판단되므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도 동일인 또는 다수인이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름에 따라 각각 독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²⁴⁾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대해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별개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독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즉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수 개의 피보험이익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피보험이익은 이처럼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수 개의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 가능한 경우 그 보험계약들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²⁵⁾

22) 第十二條 人身保險的投保人在保險合同訂立時，對被保險人應當具有保險利益。

財產保險的被保險人在保險事故發生時，對保險標的應當具有保險利益。

23) 第五十五條 投保人和保險人約定保險標的的保險價值并在合同中載明的，保險標的發生損失時，以約定的保險價值為賠償計算標準。

投保人和保險人未約定保險標的的保險價值的，保險標的發生損失時，以保險事故發生時保險標的的實際價值為賠償計算標準。

保險金額不得超過保險價值。超過保險價值的，超過部分無效。保險人應當退還相應的保險費。

保險金額低於保險價值的，除合同另有約定外，保險人按照保險金額與保險價值的比例承擔賠償保險金的責任。

24) 김성문, “피보험이익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219면; 정찬형, 전게서, 667면.

25)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385면; 양승규, 전게서, 196면.

3.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의 요건은 대체로 금전으로의 산정 가능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적법성,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사고 발생 시 확정 가능한 이익일 것을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²⁶⁾

(1) 적법한 이익일 것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민법 제103조)이나,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자유로운 사용이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피보험이익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표준은 당사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객관적인 표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²⁷⁾ 따라서 피보험이익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것을 적법하다고 생각하여도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료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지급한 보험료는 반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민법 제746조에 의해 보험자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²⁸⁾

중국 보험법 제12조 제6항은 “보험이익이란 보험가입인 또는 피보험인이 보험 목적에 대하여 갖는 법률상 인정되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와 보험목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적법성을 논하는 것은 피보험자와 보험목적 사이에 법률에 부합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²⁹⁾

(2)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제668조).³⁰⁾ 즉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익의 부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제도가 도박의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도덕적, 정신적, 종교적, 감정적 이익 등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³¹⁾

26) 김성태, 전게서, 380면.

27) 최준선, 전게서, 166~167면.

28) 양승규, 전게서, 197면.; 김성태, 전게서, 380면.

29) 靳友成, "保險利益研究", 中國人民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11頁.

30) 중국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한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피보험이익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늦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확정할 수 있는 장래의 이익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제698조). 조 건부이익 또는 상실이익도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피보험이익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특약이 존재 하여야 한다(667조).³²⁾

피보험이익이 경제적 가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한 그 손해의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람의 생명이나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 와³³⁾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고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과 같은 재산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개념 자체를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현행법상 조문의 위치 로 보아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러 한 이유에서 피보험이익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해관계로 해석하고 있지만, 생 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³⁴⁾

(3) 확정성 있는 이익

피보험이익은 계약 체결 당시 그 존재 및 소속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적어 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³⁵⁾ 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손해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익은 현존하는 확정이익에 한하지 않고 확정할 수만 있으면 조 건부이익, 장래의 이익에 대해서도 가능하다.³⁶⁾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보험이익이 없더라도 장래에 그러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합법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 대이익은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논쟁이 발생하기 쉬워 예전에 몇몇 국가에서는 금지해 왔다. 그러나 기대이익에 대한 확정이 점차

31) 박세민, 전게서, 403면; 양승규, 전게서, 197면.

32) 박세민, 전게서, 404면.

33) 장덕조, 전게서, 226면.

34) 박세민, 전게서, 404면.

35) 양승규, 전게서, 198면; 장덕조, 전게서, 226면; 박세민, 전게서, 406면.

36) 장덕조, 전게서, 226면; 양승규, 전게서, 198면.

정확해지고 법률상으로도 인정되면서 피보험이익으로 인정하고 있다.³⁷⁾ 그러나 기대이익을 넓게 보거나 좁게 해석하거나 이미 확정된 현재의 이익과 다르기 때문에 기대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기대이익은 현실적인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여 통상적인 용도와 방법으로 경영 또는 운영하는 것으로 획득 가능한 이익이어야 한다.³⁸⁾

Ⅲ.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1. 피보험이익 개념의 적용여부

우리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손해보험 계약에 특유한 개념으로 인정하고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중국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2009년 보험법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강조하고 피보험이익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적용대상을 조정한 점이다.³⁹⁾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한 신체 또는 생명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생명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대상자의 가치 확정이 어려운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필수요소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및 중국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륙법계에서는 부정설을 주장하고 있고 영미법계 및 중국은 긍정설을 주장하고 있다.

37) 林龍洙, 「保險法」, 법률정보센터, 2006, 246면.

38) 樊啓榮, 「保險法」, 北京大學出版社, 2011, 52頁; 范玲, “論人身保險中保險利益的存在時間”, 「經濟研究導刊」第23期, 2012, 127頁.

39) 중국 보험법 제12조 ① 생명보험의 보험인은 보험계약체결 시 피보험인에 대하여 당연히 보험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재산보험의 피보험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목적에 대하여 당연히 보험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생명보험은 사람의 수명과 신체를 보험목적으로 간주하는 보험이다. 재산보험은 재산 및 그 관련 이익을 보험목적으로 간주하는 보험이다. ④ 피보험인이란 그 재산 또는 생명이 보험계약의 보장을 받고 보험금청구권을 향유하는 자를 말한다. ⑤ 보험인은 피보험인이 될 수 있다. ⑥ 보험이익이란 보험가입인 또는 피보험인이 보험목적에 대하여 갖는 법률상 인정되는 이익을 말한다.

(1) 부정설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지위와 관련해서 절대설과 상대설의 견해가 대립되나, 모두 피보험이익의 개념 자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반면, 생명보험계약은 손해보험계약과 달리 사람의 생사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손해의 유무에 상관없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보험계약이므로, 피보험이익을 생명보험계약의 필수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리나라가 속한 대륙법계 국가의 다수설적 입장이다.⁴⁰⁾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륙법계의 다수설로서 우리 상법 제688조도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국한하여 규정하였고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손해보험 계약의 중심요소로서만 피보험이익을 다루고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⁴¹⁾

(2) 인정설

피보험이익의 기능적 측면에서 즉, 타인의 생사가 도박행위에 이용될 위험성과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피보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인위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근거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생명보험에서도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의 대표적인 학자는 E. Bruck, S. Huebner, M.R. Greene 등과 일본의 경우 今林有, 大村榮一등이 있다.⁴²⁾

우리나라에서도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도 적지 않다. 생명보험도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말미암은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의 혈연관계, 부양관계 그 밖의 실제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⁴³⁾, 현행 상법의 해석상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40) 나윤수, “피보험이익”, 한국해법학회지 제19권2호, 한국해법학회, 1997, 106면; 정찬형, 전게서, 828-829면.

41) 정동윤, 「상법(하)」, 박영사, 2010, 698면

42) 김성문, 전게논문, 226면.

43) 양승규, 전게서, 440면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면 그 계약은 사행적 계약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견해⁴⁴⁾, 경제적 수요나 도덕적 의무와 전혀 무관하게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손해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사행계약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견해⁴⁵⁾ 등 우리 상법 상으로도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전혀 도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들이 있다.⁴⁶⁾

(3) 중국의 경우

중국의 다수설은 “인정설”입장이며, “부정설”을 취하는 소수설이 존재하는데, 첫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와 연결되어 있고 경제성이 없으며 금전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이익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⁴⁷⁾ 둘째, 피보험이익 개념의 적용은 피보험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독립적인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보험자의 자아보호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의지와 다르게 성립되며 이러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상실되면 피보험자의 생명과 신체는 위협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피보험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험목적물로 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권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피보험자의 생명은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⁴⁸⁾

2.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특징

(1) 피보험이익의 형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일정한 경제이익이 포함 되어 있고 그 외에 일정한 추상적인 정신이익도 포함 되어 있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신체에 손상을 입을시 지불하여야 하는 의료비용과 기타비용, 또는 일정한 관련이 있는 타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생활비용이나 각종 계약으로 인한 채무관계 또는 재산관리로 인한

44) 채이식, 「상법 IV」, 박영사, 2001, 207면.

45) 이기수, 「보험법」, 박영사, 1996. 131면

46) 김철호, 전게논문, 38면.

47) 邹海林, "论保险利益原则及其适用", 中外法学, 1996, 5頁.

48) 陳圣利, “保險利益的法理分析”, 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27頁.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에 대한 채권 등이 전부 경제이익에 속한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상술한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신체에 손상을 입을 경우 상술한 부분의 경제이익에 대한 손실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준다. 보험계약자는 혈연 또는 기타관계인인 타인의 신체에 피보험이익이 있다. 경제적으로 관련된 존재가 아니어도, 더욱 중요한 것은 감정적 교류이다. 경제적인 정신이익이 아닌 정신적인 의뢰다, 이런 이익은 금전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는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⁴⁹⁾ 또한 영미법상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광의로 보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상(substantial loss or injury of some kind)을 입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와 보험사고 사이의 관계"라고 정의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⁵⁰⁾

(2)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요건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요건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이 적법 여부의 구별은 당사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그의 판단기준은 영미법상 우선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하여 금전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여부, 그리고 선의(good faith)였는가 여부, 또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의 생명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단순한 도구가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것이 판단기준이다.⁵¹⁾

그러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비교해보면 특질도 있다. 첫째,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상법 제730조) 정액보험이 원칙적이다. 둘째, 생명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⁵²⁾ 그러데 "생명관한 것"의 의미는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⁵³⁾ 그러므로

49) 靳友成, 前掲文, 20頁.

50) Edwin W. Patterson, "Essentials of Insurance Law", 2d, 1957, p 109.

51) 상홍규,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60면

52) 우리 상법 제730조는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보험법 2002년 보험법 제52조 제52조 ① 인신보험계약은 사람의 수명과 신체를 보험의 객체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② 본 절에서의 인신보험계약은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이라 약칭한다.)에서 규정하였으나 2009년 개정 보험법에서 삭제되었다.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어떠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할 것인가를 특정하여야 한다.

3.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인정범위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영국과 미국의 보험법제에서는 생명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⁵⁴⁾

(1) 자기의 생명보험계약

자기의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생명보험 즉, 보험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을 말한다.⁵⁵⁾ 영미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명에 대해 무제한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자기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에는 제한이 없다.⁵⁶⁾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으며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⁵⁷⁾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도덕적 위험 또는 도박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보험은 피보험이익에 제한이 없다면 자신이 생각한 사람을 피보험이익 유무의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⁵⁸⁾

(2)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1) 제한의 이유 및 입법례

자기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이든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계약을

53) 상홍규, 전계논문, 60면.

54) 김대웅,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7, 155면; 김철호, 전계논문, 49면.

55) 김철호, 전계논문, 50면.

56) 김철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연구”, 「기업법연구」 제24권 제3호, 2010, 252면.

57) 자세한 내용은 김철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연구”, 252면 이하 참조.

58) 김대웅, 전계논문, 157-158면.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적을 것이나,⁵⁹⁾ 타인의 생명보험, 특히 타인의 사망보험은 보험계약자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자기의 사망보험과는 달리 타인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자체가 도박 또는 투기의 목적에 악용될 염려가 있고, 또한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보험금 취득을 위하여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할 우려가 있는 등 폐해가 예상 된다⁶⁰⁾.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각 나라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이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에 모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익주의, 동의주의, 친족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⁶¹⁾

2) 이익주의

피보험자인 타인의 생사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 즉,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방식으로서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사망에 대하여 이러한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못하는 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⁶²⁾ 영미법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시에 요구되며 계약 존속을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해석된다.⁶³⁾ 생명보험에서도 금전상의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정하는 영미법계의 입법태도가 여기에 속한다(뉴욕주 보험법 제146조). 이익주의의 주된 목적은 피보험자의 생사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사망보험을 체결하는 도박보험의 위험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익주의에 대해서는 오늘날 생명보험의 영역을 크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⁶⁴⁾

59) 김대웅, 전계논문, 158면.

60) 박세민,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안암법학』 제25호, 2007, 910-911면.

61) 김철호, 전계논문, 252면.

62) 박세민, 전계논문, 911면.

63) 김철호, 전계논문, 254면.

64) 박세민, 전계논문, 911면; 김철호, 전계논문, 254면.

3) 동의주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타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및 일본이 동의주의에 속한다. 우리나라 상법 제731조에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⁶⁵⁾ 그러나 동의주의는 도박보험의 방지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데는 미흡하며, 동의제도가 형해화되고 있으며, 동의를 이행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⁶⁶⁾

4) 친족주의

친족주의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만이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으면 계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⁶⁷⁾ 친족 간에는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의 살해의 위험성이 없으며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어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격을 크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기초한다.⁶⁸⁾

5) 중국의 경우

중국 보험법은 절충주의로 이익주의와 동의주의를 결합하여 친족관계를 규정하며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⁶⁹⁾ 중국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도박행위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입법조치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요구하는 이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이익의 추정을 인정하고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이익이 추정됨으로써 엄격한 피보험이익주의를 완화하고 있다.

중국 보험법 제12조 제1항은 “생명보험의 보험인은 보험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에

65) 박세민, 전계논문, 912면.

66) 김선정,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49집, 1997, 305면.

67) 박세민, 전계논문, 913면.

68) 박세민, 전계논문, 913면; 김대웅, 전계논문, 160면.

69) 閔芳趙 / 坤堯, “論我國人身保險利益的原則”, 『企業導報』 第2期, 2010, 140頁.

대하여 보험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험법 제31조는 “① 보험가입자는 다음의 원인에 대한 보험이익을 갖는다. (一) 본인 (二) 배우자, 자녀, 부모 (三) 전항 이외에 보험가입자와 부양, 봉양 또는 양육관계가 있는 가족의 기타 구성원 근친족 (四) 보험가입자와 노동관계가 있는 노동자 ② 전항 규정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피보험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명보험계약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중국 보험법 제34조는 ①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인의 동의와 보험금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승낙이 없으면 계약은 무효이다. ② 사망을 보증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의거하여 서명, 발급한 보험증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위하여 가입한 생명보험은 제1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국 보험법도 피보험이익 대하여 생명보험은 동의주의이다.

IV.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유형

자기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의 요건이 충족되어 증명을 요하지 않으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해 어떠한 이익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⁷⁰⁾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초기의 대표적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유형을 재산적 이익의 관계와 혈연이나 인척에 의한 가족관계로 구분하고 이러한 이익이 없는 경우 그것은 도박계약에 불과하고 그 계약관계를 체결한 자는 피보험자의 조기사망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⁷¹⁾ 이처럼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의 범위는 금전적 이해관계와 친족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⁷²⁾

70) 김철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60면.

71) Warnock v. Davis, 104 U.S. 775 (1881).

72) 김대웅, 전계논문, 160면; 김철호, 전계논문, 60면.

1. 친족관계에서의 피보험이익

(1) 혼인관계

영미법 국가에서는 부부 상호간 친근관계가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Griffiths v. Fleming(1909) 사건에서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영구적인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⁷³⁾ 사실혼 사이인 동거인에게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였다. 약혼의 경우 미국의 판례에 따르면 약혼자는 보험의 혜택을 누리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대의 판례도 있다.⁷⁴⁾ 중국의 경우 배우자 상호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며,⁷⁵⁾ 사실혼이나 약혼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2) 부모와 자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영국의 Halford v. Kymer(1830) 사건은 단지 부자관계만으로 자녀의 생명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Harse v. Pearl Life Ass. Co.(1904) 사건은 성년의 자녀는 부모의 생사에 일반적으로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듯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또는 성년의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각각 피보험이익을 갖지 못하며 이는 재정적 손실이나 금전적 이해가 없음으로 인하여 인정하지 않았다.⁷⁶⁾ 반면, 미국에서는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상호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나 자녀의 성년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부양과 교육의무가

73) 김철호, 전계논문, 61면.

74) 김대웅, 전계논문, 161면.

75) 중국 보험법 제31조 ① 보험가입자는 다음의 원인에 대한 보험이익을 갖는다. (一) 본인 (二) 배우자, 자녀, 부모 (三) 전항 이외에 보험가입자가 부양, 봉양 또는 양육관계가 있는 가족의 기타 구성원 근친속 (四) 보험가입자와 노동관계가 있는 노동자 ② 전항 규정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피보험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인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76) 김철호, 전계논문, 62-63면; 김대웅, 전계논문, 161-162면.

있으며 성년의 자녀는 부모에게 봉양의무가 있다.⁷⁷⁾⁷⁸⁾ 이러한 법정의무로 부모와 자녀사이에 피보험이익이 있다.⁷⁹⁾

(3) 혼인관계 외의 친족관계

혼인관계 외에 친족관계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친족관계의 존재외에 금전적 의존관계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친족 간에 피보험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방이 타방에 대해 법률에 의해 강제될 수 있는 부양의무를 부담하여야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적 의무에 기해서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한 영국과 미국의 판례도 있다.⁸⁰⁾

2. 거래관계에 의한 피보험이익

(1) 고용관계

고용주는 피용자의 고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예근무기간 또는 확정된 고용기간 중 소멸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피용자도 고용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그러나 피용자에 대한 고용주의 이익에 대한 측정이 어려워 대체로 핵심임원에 대하여만 보험가입이 이루어진다.⁸¹⁾

중국 보험법은 고용주가 피용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⁸²⁾

77) 중국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中華人民共和國老年人權益保障法) 제14조 ① 부양인은 노인의 경제적 공양, 생활상 보살핌과 정신적 위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을 보살필 특별한 필요가 있다. ② 부양인이란 노인의 자녀와 그 밖의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③ 부양하는 배우자는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78)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 제21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第二十一條 父母對子女有撫養教育的義務; 子女對父母有瞻養扶助的義務。父母不履行撫養義務時, 未成年的或不能獨立生活的子女, 有要求父母付給撫養費的權利。子女不履行瞻養義務時, 無勞動能力的或生活困難的父母, 有要求子女付給瞻養費的權利。禁止溺嬰、棄嬰和其他殘害嬰兒的行爲。)

79) 陳麗潔, “論人身保險的保險利益主體範圍的界定”, 「柳州師專學報」, 27卷, 2012, 54頁.

80) Barnes v. London, etc., Ins. Co., [1892] 1 Q. B. 864; Cronin v. Vermont Life Ins. Co., 20 R. I. 570(1898). 김철호, 전게논문, 61-62면; 김대웅, 전게논문, 62면.

81) 김철호, 전게논문, 65면.

82) 중국 보험법 제31조는 “① 보험가입자는 다음의 원인에 대한 보험이익을 갖는다. (一) 본인 (二) 배우자, 자녀, 부모 (三) 전항 이외에 보험가입자와 부양, 봉양 또는 양육관계가 있는 가족의 기타 구성원 근친족 (四) 보험가입자와 노동관계가 있는 노동자.

(2) 채권·채무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가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에 채무를 변제받기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 채권액을 한도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사망은 채무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이익은 성립하지 않는다.⁸³⁾

V. 결 론

피보험이익론은 18세기 영국에서 성행한 도박보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피보험이익을 손해보험에서만 인정하는 대륙법계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모두 인정하는 영미법계로 나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을 손해보험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인간의 생명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에는 경제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요건은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도박보험의 방지와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것에 있으므로 피보험이익의 요건에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제한이 필요하다.

피보험이익의 적용에 대하여 영국, 미국 등은 이익주의를 적용하고, 한국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동의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익주의와 동의주의를 결합하여 일정한 친족관계를 규정하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므로 절충주의를 적용한다.

83) 陳麗潔, 前掲文, 54頁.

우리나라도 생명보험에서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위험보장 수단으로서의 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생명보험에 피보험이익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며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 林龍洙, 「保險法」, 법률정보센터, 2006.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5.
-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8.
- 정찬형, 「상법강의 (하)」, 박영사, 2019.
- 최준선, 「보험법·해상법」, 삼영사, 2010.
- 채이식, 「상법 IV」, 박영사, 2001.
-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8.
-
- 김대웅,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7.
- 김신정,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49집, 1997.
- 김성문, “피보험이익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김철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연구”, 「기업법연구」 제24권 제3호, 2010.
- 김철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집, 2010.
- 박세민,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안암법학」 제25호, 2007.
- 상흥규,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임재호, “인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1권 제1호 통권 49호, 2000.
-
- 鄭玉波, 「保險法論」, 三民書局, 2007.
- 樊啓榮, 「保險法」, 北京大學出版社, 2011.

陳麗洁, “論人身保險的保險利益主体範圍的界定”, 「柳州師專學報」, 27卷, 2012.

陳圣利, “保險利益的法理分析”, 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范玲, “論人身保險中保險利益的存在時間”, 「經濟研究導刊」, 第23期, 2012.

閔芳趙 / 坤堯, “論我國人身保險利益的原則”, 「企業導報」, 第2期, 2010.

靳友成, “保險利益研究”, 中國人民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江朝國, “保險利益之研究”, 「保險法評論」, 第1卷, 中國法制出版社, 2008.

王萍, “保險利益研究”, 中國政法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鄒海林, “論保險利益原則及其适用”, 中外法學,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 focused on comparison with China -**

Shin, Chan-Ho*

Both of insurance and gambling belong to the gambling behavior, but both side have distinctively different social effects.

Insurance can prevent accidents beforehand, disperse risks, and bring social stability. What distinguishes insurance from gambling is the effect of Insurable Interest.

Insurable Interest can be traced its origin of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and as the insurance business has evolved, countries have been actively discussing the Insurable Interest. Insurable Interest, as a core concept and principle, has the functions of preventing gambling and moral hazard and limiting the amount of damage compensation.

In our commercial law, it is recognized only Insurable Interest, but, eve in the majority view of the academia, Insurable Interest isn't recognized in Life Insurance.

However, the increasing moral hazard is coming to the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Insurable Interest existence in Life Insurance and to prevent the risk.

On the amendment of 2009 Insurance Act in China, it was clarified the concept and insurance coverage of Insurable Interest and defined the coverage to Life Insurance.

In the followings, it will be examined first the concept and main functions of

* Ph.D. in law,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Law Kookmin University

Insurable Interest of Korea and China, and the Insurable Interest recognition and the view of theories on its recognition range.

Key Words : Insurable Interest, Life Insurance, Life Insurance for Third, Theory of Interest, Theory of Relation, Principle of Insurable, Principle of Consent

